

제29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수정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 수 정
(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재원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수립기준”)에 부합하는 수입 과목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의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기금 재원으로 출연금,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수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수립기준”에 따라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 민간,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출과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에 맞는 수입과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